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94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윤건영 · 김 윤 · 모경중
박지혜 · 박해철 · 신정훈
윤종균 · 이광희 · 이기현
이상식 · 이재관 · 장종태
정진욱 · 주철현 · 채현일
한민수 · 황정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 14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사청문회의 구분)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생략) <u><신 설></u>	<u>제4조의2(인사청문회의 구분)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